

부속서 I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 한국

##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및 제10.15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한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5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6조(최혜국 대우)

다. 제8.6조(시장접근)

라. 제8.7조(현지주재)

마. 제10.11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10.12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8.8조제2항 및 제10.15조제2항에 따라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8.8조제2항 및 제10.15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4조(내국민 대우)와 제8.7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8.7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 한국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투자

1. 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2012) 제4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3)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한국은 신속히 뉴질랜드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20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3) 및 그 밖의 적용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달성하려는 목적과 비례한다.

2. 제10.18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분쟁 해결)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다음의 청구를 제10장(투자)의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가. 한국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나. 청구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

인 한국 기업이 그 조치를 이유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제10장(투자)제2절이 준용되며, 제10장(투자)제1절상의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제10장(투자)제2절상의 모든 언급은 이 유보항목이 없었다면 제10장(투자)제1절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러나 한국이 그 조치가 제1항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제17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p> <p>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 당국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p>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한국의 부속서 I 및 II 상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1845호, 2013.5.28)

<b>분야</b>	모든 분야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방위산업체(방위사업법 제3조에 규정된 기업)의 신주발행 주식이 아닌 기발행 주식을 인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규정)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b>기존의 조치</b>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방위사업법 제35조(법률 제11713호, 2013.3.23)

분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토지 취득이 계속 허용된다.

가. 외국인토지법 제2조상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또는

3)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토지법 제2조부터 제6조까지(법률 제11690호, 2013.3.23)

농지법 제6조(법률 제11694호, 2013.3.23)



분야	총포, 도검, 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또는 석공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공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 가. “모든 분야” 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 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 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고 기재한다.
- 나. “모든 분야” 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상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 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 사항을 해당 서비스 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그 부록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와 관련한 어떠한 제한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 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8.8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 8.7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항공</li> <li>나. 수산</li> <li>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또는</li> <li>라. 통신</li> </ul>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오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 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철도운송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 및 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 및 처리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다음의 환경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과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분야</b>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b>분야</b>	에너지 서비스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b>유보내용</b>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전력)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10.11조제1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p>

분야	에너지 서비스 - 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가스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농축산물, 식음료에 대한 중개서비스  나. 곡물, 육류, 가금, 곡분, 홍삼, 비료에 대한 도매서비스, 그리고  다.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소매서비스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연안운송은 제외한다)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운송 서비스 -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b>분야</b>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b>유보내용</b>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다음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외국인에 의한 우편 서비스의 운영 및 제공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인 이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p> <p style="padding-left: 40px;">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 량 정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 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p> <p>한국 우정당국은 국내 및 국외 서신의 수집, 처리 및 배 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과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p> <p>우편 서비스에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다.</p>
<b>기존의 조치</b>	우편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병역법(법률 제11849호, 2013.6.4)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b>분야</b>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b>기존의 조치</b>	방송법 제8조, 제9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제78조 및 제78조의2(법률 제12093호, 2013.8.13)  방송법 시행령 제14조,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의3(대통령령 제24763호, 2013.9.26)

<b>분야</b>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IPTV와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b>기존의 조치</b>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7조, 제9조, 제18조 및 제21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24445호, 2013.3.23)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7.1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호, 2008.12.31)

<b>분야</b>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이행요건(제10.11조)
<b>유보내용</b>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 또는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장한다.</p>
<b>기존의 조치</b>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11902호, 2013.7.16)</p>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9조(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p>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8호, 2012.8.17)</p> <p>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호, 2008.12.31)</p>

분야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p data-bbox="571 521 997 560"><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 data-bbox="571 604 1415 723">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 공급, 관리, 판매 및 임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야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할 때, 한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어떠한 조치도 제17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적용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그 밖의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의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서비스나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분야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분야** 교육서비스 -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및 그 밖의 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보건 및 의료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 교육 서비스는 제외한다), 그리고 그 밖의 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7.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

<b>분야</b>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재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b>기존의 조치</b>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1228호, 2012.1.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62호, 2012.6.1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82호, 2011.7.2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2011.2.16)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30호, 2012.12.11)

분야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b>분야</b>	도박 및 베팅 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 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 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b>기존의 조치</b>	관광진흥법 제5조, 제21조 및 제28조(법률 제12406호, 2014.3.1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법률 제12154호, 2014.1.1)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법률 제12348호, 2014.1.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0조(대통령령 제25511호, 2014.7.28)  한국마사회법 제3조, 제22조 및 제48조(법률 제12437호, 2014.3.1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6조 및 제22조(법률 제12434호, 2014.3.18)  경륜·경정법 제4조, 제19조 및 제24조(법률 제12688호, 2014.5.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및 제22조(법률 제11998호, 2013.8.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분야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p> <p style="padding-left: 40px;">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p> <p style="padding-left: 40px;">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데 대한 제한, 그리고</p> <p style="padding-left: 40px;">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p>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p> <p style="padding-left: 40px;">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뉴질랜드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뉴질랜드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p>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뉴질랜드 법무회사(로펌)란 뉴질랜드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사가 뉴질랜드 내에 있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그리고 제공 서비스의 범위를 포함하여 회계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국공인회계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b>분야</b>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그리고 제공 서비스의 범위를 포함하여 세무사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국세무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b>기존의 조치</b>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법률 제11610호, 2013.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대통령령 제24824호, 2013.1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39호, 2014.10.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07호, 2014.3.14)

분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현지주재(제8.7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p>
기존의 조치	<p>원자력 진흥법(법률 제11714호, 2013.3.23)</p> <p>대외무역법(법률 제11873호, 2013.6.7)</p> <p>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9호, 2013.5.31)</p> <p>관세법(법률 제11602호, 2013.1.1)</p>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은 제10.2조(정의)의 “투자” 정의에 따라, 예를 들어 법집행 및 교정서비스와 같이 정부권한의 행사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이 유보항목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 투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분야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은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관련 국내법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연안해상운송은 한국 선박을 위하여 유보되며 한반도 전체 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한반도 전체 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또는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된다.

“한국 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
- 나.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 다.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또는
- 라.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가 한국 국민인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20.2조(안보 예외)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 뉴질랜드

### 주해

1. 이 부속서의 뉴질랜드의 유보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및 제10.15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뉴질랜드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5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6조(최혜국 대우)

다. 제8.6조(시장접근)

라. 제8.7조(현지주재)

마. 제10.11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10.12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6조(시장접근)는 비차별적인 조치를 지칭한다.

2. 제8.4조(내국민 대우)와 제8.7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8.7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3. 뉴질랜드 유보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비합치 조치의 성격 또는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포함된다. 이에 규정된 조치는 포괄적이지 아니하다.

4. 제8.8조(비합치 조치) 및 제10.15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유보항목의 해석과 관련하여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가 우선한다.



## 뉴질랜드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질랜드는 다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공공의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다음의 사항  1) 보육  2) 보건  3) 소득 보장 및 보험  4) 공교육  5) 공공주택  6) 공공훈련  7) 대중교통  8) 공익사업  9) 사회 보장 및 보험, 또는  10) 사회 복지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식수의 배분, 수집, 처리 및 유통을 포함하여, 물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는 병에 담긴 광수, 탄산수와 천연수의 도매 및 소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뉴질랜드는 협정 발효시점에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이양 행위의 일부로서만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li> <li>나. 뉴질랜드 정부가 전부 또는 과반을 소유하는 기업이 유일한 서비스 공급자가 되거나 한정된 수의 서비스 공급자 중 하나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li> <li>다. 고위경영진 및 이사의 구성에 제한을 부과하는 것</li> <li>라. 현지주재를 요구하는 것, 또는</li> <li>마. 서비스 공급자(들)의 법적 형태를 명시하는 것</li> </ul>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질랜드 정부가 기업을 전적으로 소유하거나 기업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국민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인에 대한 그 기업의 지분 또는 그 기업의 자산 판매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뉴질랜드는 GATS상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62, GATS/SC/62 Suppl.1, GATS/SC/62/Suppl.2)에 규정된대로 GATS의 제16조에 따른 뉴질랜드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sup>1</sup>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규정된 대로 수정된다.

---

<sup>1</sup> 이는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및 제10.15조(비합치 조치)의 규정이 부속서 I의 뉴질랜드 유보목록의 시장접근유보항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5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투자

뉴질랜드는 자국의 해외투자 제도에 따라 다음의 투자 행위에 대하여 뉴질랜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뉴질랜드 기관 내 25퍼센트 이상의 어떤 유형의 지분<sup>2</sup> 또는 의결권<sup>3</sup>의 취득 또는 지배로서, 이전 비용 또는 자산가치가 5천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나. 뉴질랜드 내에서 사업운영의 개시 또는 사업 자산을 포함한 기존 사업의 인수로서, 그 사업 또는 자산의 개시 또는 인수에 수반되는 총 비용이 5천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다. 달러가치에 관계없이, 뉴질랜드 해외투자 법률에 따라 민감하다고 간주되거나 특별승인이 요구되는 일정 유형의 토지의 취득 또는 지배, 그리고
- 라. 달러가치에 관계없이, 상업적 어획할당량 또는 연간 어획권을 보유하는 뉴질랜드 기관 내 25퍼센트 이상의 어떤 유형의 지분 또는 의결권의 취득, 또는 상업적 어획할당량 또는 연간 어획권의 취득

뉴질랜드는 자국의 해외투자 제도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유형의 거래에 적용되는 승인 기준을 규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sup>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분’이라는 용어는 지분 및 그 밖의 유형의 증권을 포함한다.

<sup>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결권’은 뉴질랜드 기관 이사회 구성의 25퍼센트 이상에 대한 지배권을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2005년 해외투자법

1996년 어업법

2005년 해외투자규정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자유화에 대한 협정과 관련하여, 이는 경제통합 또는 무역 자유화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그러한 협정 당사자들 간에 취하여진 조치를 포함한다.

뉴질랜드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항공
- 나. 수산, 또는
- 다. 해상 사안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뉴질랜드는 다음의 통제,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토지 자원, 토지 또는 수원의 지분을 포함하여 유적지 관리 목적(역사적 그리고 자연 유적지), 공공 문화시설, 그리고 경관 보존을 위하여 조성된 보호 구역, 또는</p> <p>나. 법령 하에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또는 법령 하에서 보호되는 생물종</p>
기존의 조치	<p>1987년 보존법 및 다음에 열거된 법령:</p> <p>가. 1987년 보존법의 제1양허표</p> <p>나. 1991년 자원관리법, 그리고</p> <p>다. 1974년 지방정부법 및 이후의 개정사항</p>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질랜드는 다음에 관련된 어떠한 국적 또는 거주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동물 복지, 또는
- 나.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식물, 동물 및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보존
  - 1) 국내 및 수출 식품의 식품안전성
  - 2) 동물사료
  - 3) 식품기준
  - 4) 차단 방역
  - 5) 생물다양성, 또는
  - 6) 식물 또는 동물 상품의 건강 상태의 증명

이 유보의 어떠한 내용도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의무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의 어떠한 내용도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의무 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해안 및 해저, 국제법에 정의된 내수(그러한 내수의 하상, 하층토 및 경계를 포함한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의 해상 할양을 포함하여 대륙붕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 하에서 취하여지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991년 자원관리법  2011년 해양 및 연안지역(타쿠타이 모아나)법  1964년 대륙붕법  1991년 국유 천연자원법  2012년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환경영향)법

분야	사업 서비스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대중에 대한 공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법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소방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질랜드는 항공화재진압 서비스를 제외한 소방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975년 소방서비스법  1977년 산림 및 농촌지역 소방서비스법

분야	사업 서비스 연구 및 개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다음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국립연구소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 및 개발 서비스로서 그러한 연구가 공공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또는  나. 물리과학, 화학, 생물학, 공학 및 기술, 농업과학, 의학, 약학 그리고 그 밖의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

분야	사업 서비스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p data-bbox="542 517 1418 562"><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 data-bbox="542 600 1418 683">뉴질랜드는 다음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54 728 1418 772">가. 성분 및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li> <li data-bbox="654 806 1418 851">나. 기술적 진단 서비스</li> <li data-bbox="654 884 1418 929">다. 그 밖의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li> <li data-bbox="654 974 1418 1064">라. 지질학적, 지구 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서비스, 또는</li> <li data-bbox="654 1097 1418 1137">마. 약물 검사 서비스</li> </ul>

<b>분야</b>	사업 서비스 수산업 및 양식업 수산업 및 양식업 관련 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b>유보내용</b>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질랜드는 어류육상반입, 해상에서 가공되는 어류의 최초 육상반입, 그리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는 뉴질랜드 항구에의 접근(항구 특권)을 포함하여, 외국의 어업활동을 통제할 권리를 유보한다.
<b>기존의 조치</b>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1996년 어업법 및 2004년 양식개혁법에 포함된 기존 조치의 예시는 다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해외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선박은 수산업부 책임자의 허가 없이, 그리고 책임자가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요건을 조건으로, 상업적 어업행위 또는 어류 수송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될 수 없다.</li> <li>나. 외국 어선 또는 어류 수송선은 뉴질랜드 내수 또는 항구에 진입하기 전에 책임자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그 선박이 국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책임자는 그 선박의 뉴질랜드의 내수 진입을 위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li> <li>다. 해외의 인이 임시 어획 경력, 할당량, 또는 연간 어획권을 배분받을 수 있거나, 구매 또는 소유할 수 있기 전에 장관 승인이 요구된다.</li> <li>라. 1996년 「어업법」 S.296B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정한 명시된 기능, 의무, 또는 권한</li> </ul>



은 명시적인 기준과 부합하는 승인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만 이전될 수 있다.

- 마. 외국 연구선은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류, 해조류 또는 수중 생물을 어획하기 위하여 수산업부 장관의 허가가 요구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에너지 제조업 도매 거래 소매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p data-bbox="558 761 989 806"><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 data-bbox="558 851 1418 1012">뉴질랜드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 설정을 포함하여,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 이용, 유통 또는 소매를 금지, 규제, 관리 또는 통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야	사업 서비스 이민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뉴질랜드는 뉴질랜드와 관련된 이민 사안 관련 이민 자문을 인에게 제공하는 자연인에 관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면허 요건 및 그러한 요건의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뉴질랜드가 정보 공유 또는 상호 협정을 맺은 국가 내 뉴질랜드의 면허 요건의 집행과 관련된 상호 협정에 가입하는 한도에서, 최혜국 대우 의무에 관하여만 적용된다.</p> <p>이 유보는 뉴질랜드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한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우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우편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b>분야</b>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청각 및 그 밖의 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공동제작 약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특혜적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그러한 약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b>기존의 조치</b>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1978년 「뉴질랜드 영화위원회법」 S.18은 뉴질랜드 영화위원회의 자금지원을 “뉴질랜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된 영화로 한정한다. 이 기준은 해당 상대국과의 공동제작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제작된 경우에는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청각 및 그 밖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내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의 진흥 그리고 공중 라디오 및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에서의 지역 콘텐츠 진흥과 관련한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 하에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다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2001년 낙농구조조정법(DIRA) 7(1)(a)절에 의하여 승인된 합병으로 생긴 협동 낙농회사(또는 승계기관)의 지분 보유, 또는  나. 그 회사 또는 승계기관의 자산의 처분
기존의 조치	2001년 낙농구조조정법 및 이후의 규정



분야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호주 외의 모든 시장에서 신선 키위의 수출 마케팅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999년 키위산업구조조정법 및 규정

분야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질랜드는 다음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관세할당, 국가별 특혜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조치가 시행 중인 시장에 대한 농업에 관한 협정이 적용되는 동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분류 내에 해당하는 수출품의 유통 권한에 대한 정부보증 배분제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조건의 명시, 또는

나. 그러한 배분제의 수립 또는 운영에 따른 도매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유통 권한의 배분

이 유보는 농업에 관한 협정이 적용되는 품목별 세번의 상품과 관련된 도매 및 유통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모든 투자를 금지하는 효과를 의도하지 아니한다. 이 유보에 명시된 서비스 분야가 관세할당, 국가별 특혜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의 일부인 한도에서 투자에 대하여 이 유보항목이 적용된다.



분야	교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교육 용어 및 명칭의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용어는 1989년 교육법 S.29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학”, “교육대학”, “기술전문대학” 및 “기술기관” 을 포함한다.

분야	보건 및 사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입양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모든 서비스 공 급자 및 투자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 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보건 및 사회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민간 분야에 의하여 제공되는 한도에서, 뉴질랜드는 다음의 서비스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병원 서비스, 또는</p> <p>나. 출산 서비스 및 조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관련 서비스</p>

분야	오락, 문화 및 스포츠(시청각 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시장접근(제8.6조) 이행요건(제10.11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뉴질랜드는 도박, 베팅 및 매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003년 도박법 및 규정  2003년 매춘개혁법  2003년 경주법  2004년 경주(피해 예방 및 최소화) 규정  2009년 경주(뉴질랜드 그레이하운드 경주 협회) 규율

분야 오락, 문화 및 스포츠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7조)  
이행요건(제10.11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뉴질랜드는 다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국가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민족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문화재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및 그 밖의 문화유산수집기관이 문서화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수집품을 포함한다.
- 나. 공공 기록보관소
- 다. 도서관 및 박물관 서비스, 또는
- 라. 역사 또는 종교 유적지, 또는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에 관한 서비스





분야 유통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뉴질랜드는 담배 제품 및 주류의 도소매업 서비스에 대하여, 공중 보건 또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부록 II-가

### 한국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u>분야/하위분야</u>	<u>시장접근 개선사항</u>
<p><u>연구 및 개발 서비스</u></p> <p style="padding-left: 40px;">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 style="padding-left: 40px;">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 style="padding-left: 40px;">학제간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u>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u></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p>
<p><u>광업 부수 서비스</u></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p>
<p><u>포장서비스</u></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p>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 data-bbox="204 297 592 331"><u>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u></p> <p data-bbox="323 398 724 600">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는 제외한다)</p> <p data-bbox="323 745 580 779">여행 대행 서비스</p> <p data-bbox="323 1014 612 1048">관광객 안내 서비스</p>	<p data-bbox="767 398 1391 723">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 data-bbox="767 745 1391 992">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 data-bbox="767 1014 1391 1126">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p>

## 뉴질랜드

이 부속서 II-61쪽 뉴질랜드 유보항목의 목적상, GATS상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62, GATS/SC/62 Suppl.1, GATS/SC/62/Suppl.2)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뉴질랜드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다음의 분야에서 개선된다.

<u>분야/하위분야</u>	<u>시장접근 개선사항</u>
<u>전문직 서비스</u>	
가.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u>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u>	
가.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 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CPC 845)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u>그 밖의 사업 서비스</u>	
가. 사진 서비스(CPC 875)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나. 복제 서비스(CPC 87904)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CPC 87909**)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는 명시된 서비스가 CPC번호가 적용되는 전체 활동범위의 일부만을 구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